



김정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jhyunkim@hanafn.com

학력·자격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2013년) / 변호사
경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한양 근무



**분단으로도 끊을 수 없는 혈연...
이산가족의 상속문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이슈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상속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이산가족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쉬리〉(1998)부터 〈공동경비구역 JSA〉(2000), 〈강철비〉(2017)까지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들을 쭉 떠올려보면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이 20년 사이 엄청나게 변화했음을 실감하게 된다. 〈쉬리〉에서는 연인사이인 남녀 주인공마저 남과 북의 대치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서로에게 충구를 겨누며 비극적인 사랑을 나누었다면, 불과 2년 후에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남북한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닭싸움을 하며 우정을 쌓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강철비〉는 북한의 핵 도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남북의 두 엘리트가 먹을 것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각자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등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초점이 '휴전·대치상황'

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해왔으며, 동시에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 시각이 짙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들의 흥행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분단상황이 반세기를 넘어간 시점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은 여전히 뜨거운 주제다. 더구나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이번 〈골드클럽〉에서는 북한주민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 관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실제로 남한에 가족이나 재산을 남겨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심심찮게 발생해 왔다. 2000년 8월 15일 이후, 20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북 가족간의 소식이 계속 닿을 수 있게 된 뒤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법원은 분단의 현실로도 단절할 수 없는 혈연관계를 감안해 이러한 소송을 허용했고, 북한주민의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했다. 북한주민의 상속 소송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2011년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제정했다. 특례법은 분단 상황을 반영해 현행 민법 친족 편에 대한 특례규정을 대거 마련했다.

100억대 피난 자산가의 상속분쟁

북한주민의 상속소송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100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사건이다. 고인은 의사로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쪽에 아내와 아들들을 남겨둔채 큰딸만을 데리고 월남했다. 이후 고인은 남한에서 재혼해 다시 가족을 이루었고, 100억대의 자산을 일궈다. 고인의 사망 이후, 북에서 태어난 큰딸은 재미교포 선교사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보위부 관계자들까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어렵게 당사자인 동생들의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모발, 손톱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은 물론 위임장과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영상자료까지 선교사를 통해 남쪽으로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친자확인소송이 진행됐다. 소송과정에서 남한의 가족은 혈액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친자임이 확인됐다. 친자확인소송 이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북한의 자녀들에게 30억이 넘는 재산이 분할됐다.

다만 이 재산을 북한의 자녀들이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선 특례법에 따라 '생계유지나 질병치료' '학업에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특례법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그 재산을 관리, 사용하는 방법까지

지 규율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친자확인소송

남한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고인의 혈육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른바 친자확인소송은 혼인 중의 자로써 가족관계등록부(舊호적부)에 부모가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부모가 기재된 경우)와 인지청구의 소(부모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채취 등을 통해 유전자형 검사, 항원형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소송절차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자를 일정기간 가둬 두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친자확인소송은 별다른 증거없이 검사만으로 결과가 나온다. 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유전자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복형제들과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통해 친자여부를 확인한다.

민법에서는 이 같은 친자확인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해 친생자존재확인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역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특례법은 북한의 주민이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소를 제기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을 기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권리다. 사실 '상속권'이라는 것은 혈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권리가 소멸하거나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속권에서 비롯되는 재산적 권리행사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거래 불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에 대해 침해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행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이 규율하는 가족관계의 특례는 중혼, 실종선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의 승인 등이 있지만, 이 중 친자확인과 관련한 규정 및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의 소에 관한 특례)

- ①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예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 소의 제기예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포함한다)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제9조(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 ①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訴)는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예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남한주민과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특례법 역시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한에서 고인과 동거하며 가까이서 고인을 부양했을 남한 자녀들의 기여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특례법은 앞서 언급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이 문제된다.

10년의 청구기간 제한… 북한주민에게도 적용

이와 같은 특례법의 공백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있다. 6·25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가 2006년에 사망한 A는 남한에서 1977년에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북한에 있던 A의 딸 B는 남한에 살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1978년에 할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 할머니와 삼촌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B는 2007년 북한을 탈

출해 2009년에 입국한 뒤 아버지 A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실종선고 취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B는 2011년 삼촌들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안에서 특례법이 정하지 않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에 대해 1심법원과 2심법원의 입장이 엇갈렸다. 1심법원의 경우 특례법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2심법원은 북한주민의 청구인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 B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종결되었는데, 대법원은 B의 청구가 상속권 침해 시기로부터(1978년) 10년이 경과한 2011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를 위해 제정한 '남북가족특례법'은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과는 달리 상속재산회복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관계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보다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특례법의 해석상 국내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를 민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경우, 분단 후 70년이 경과한 현실에 비추어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남한의 상속재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앞선 사례의 큰딸처럼 남한에 소송을 대신하여 진행해줄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10년의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북한에 있는 조상 땅… 통일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일부에서는 북한 땅문서를 사고 파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과연 통일이 되면 이 문서들을 가지고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토지를 반환 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소유권이란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절대적 권리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70년 전 문서에 표시된 땅을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분류체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간 토지를 점유한 북한 주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 북한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문서상 토지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DMZ부근의 땅에 대해서는 '조상 땅 찾기'를 인정해 일부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에게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 거주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가 200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는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 리빙트러스트
대한민국 유언대용신탁

대대손손 가문의 부와 영예를 잇는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 손실 유의

계약&집행 시 1회 신탁재산의 0.2%(최저 1,000만원)
& 0.3%(최저 1,500만원) 관리보수 연 0.2~1%

본 홍보물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2914호(2018-07-05-2019-06-30)

문의 : 02-2002-2229

... SUMMARY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남북가족특례법')

1. 북한주민 역시 남한의 법원에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의 가족관계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예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한 청구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기산점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아 권리행사에 있어 10년의 제한을 받는다.
3. 북한주민의 상속권 행사는 실종선고 취소청구나 친자확인소송 이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상속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인정받더라도 그 금원을 북한의 자녀들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에 따라 '생계유지, 질병치료나 학업에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다.